

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
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교육사회위원회

전문위원 검토보고

□ 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
□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6년 1월 11일

○ 회부일자 : 2006년 1월 12일

□ 제안 이유

-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행정 수요 및 다른 타·시도 교육위원회와의 균형 등을 참작,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
- 현행 의사국장의 직급이 지방부이사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도록 하여 현실에 맞게 직급을 복수 직급으로 조정 하려는 것임.

□ 주요 내용

- 의사국장 직급 조정
 - 현행 지방부이사관을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조정

□ 검토 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,

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지역의 교육행정 수요 및 타 시·도 교육위원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직급 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
<참고자료 1 : 시·도별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정·현원 현황 참조, p.3>

○ 1996년 1월 조례개정부터 현재까지 인력 운용면에서 정·현원의 직급 불부합으로 인한 인력운용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

<참고자료 1>

시도별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정·현원 현황

시도별	의사국장		의사과장		비고
	정원	현원	정원	현원	
서울	2-3급	2급	4-5급	4급	
부산	3급	3급	4급	4급	
대구	3-4급	4급	4-5급	4급	
인천	3급	4급	4급	4급	
광주	3-4급	4급	4급	4급	
대전	3-4급	4급	4급	4급	
울산	3-4급	4급	4급	4급	
경기	3-4급	4급	4급	4급	
강원	3-4급	4급	4급	4급	
총복	3급	4급	4급	4급	
충남	3-4급	4급	4급	4급	
전북	3-4급	4급	4급	4급	
전남	4급	4급	4급	4급	
경북	3-4급	4급	4-5급	4급	
경남	3-4급	4급	4급	4급	
제주	3-4급	4급	4급	4급	